

# 최저학력제 관련 설문조사 안내문

## 1. 배경

현재('23년 9월)는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미도달하더라도,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(e-school 등)을 이수하면, 학생선수는 학교장 판단에 따라 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.

그러나 '24년 3월부터 「학교체육진흥법」과 그 시행령 개정('21년 3월)으로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학생선수는 최저학력에 미도달할 경우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.

\* 다만, '24년 3월부터라도 고등학생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, 학교장의 승인 하에 대회 참가가 가능합니다.

(최저학력의 기준: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)

- \* 초등학교: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과별 성적이 해당 학년 전체 평균의 100분의 50
- \* 중학교: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과별 성적이 해당 학년 전체 평균의 100분의 40
- \* 고등학교: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과별 성적이 해당 학년 전체 평균의 100분의 30

이와 관련, 대한체육회는 위 최저학력제 변경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. 이에 “학생선수(중학교, 고등학교), 지도자(체육교사, 감독 코치 등), 학부모님들”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.

## 2. 설문조사 개요

- 대상: 학생선수(중학생, 고등학생), 지도자(체육교사, 감독, 코치 등), 학부모
  - 각 회원종목단체 중·고등학교 학교운동부
    - ※ 현재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, 학생선수의 운동할 수 있는 권리 보호를 위해 가급적 많은 학교운동부가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종목단체에서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설문기간: 2023. 9. 27. ~ 10. 12.
- 방법: 온라인 설문(아래 설문조사 링크 참조)

## 3. 설문조사 링크

- 웹 링크

[https://docs.google.com/forms/d/e/1FAIpQLScikJ1Vwqn9pCbP-rYUj\\_jlfJOWVzNMgGhf\\_FO-hDdPdexANHQ/viewform](https://docs.google.com/forms/d/e/1FAIpQLScikJ1Vwqn9pCbP-rYUj_jlfJOWVzNMgGhf_FO-hDdPdexANHQ/viewform)

- 단축 링크: <http://bit.ly/3rsloVr>

※ 참여방법 1) 웹링크 클릭 또는 QR코드 사진 촬영

2) 또는 단축 링크 클릭(안 될 경우 URL 복사, URL창에 직접 입력)



4. 대한체육회 → 회원종목단체 협조 요청사항

○ [회원종목단체→중학교/고등학교 학교운동부] 설문조사 참여 안내

※ 초등학교는 상대적으로 최저학력 미도달 비율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설문조사 대상 제외

※※ 중고연맹 등 중고등학교 운동부 관할 연맹을 통한 전달이 설문조사에 효율적일 경우, 중고 연맹 등을 통해 설문조사 내용 전달

○ (지도자(체육교사, 감독, 코치 등) → 학생선수/학부모) 설문조사 참여 안내

- 지도자(체육교사, 감독, 코치 등)는 본인도 설문조사에 참여하고, 학생선수 뿐 아니라 학부모도 설문조사에 필히 참여토록 안내·독려

※ [참고] 「학교체육진흥법」제11조제1항 개정 내용

현행	개정 후 <'24년 3월 이후>	비고
제11조(학교운동부 운영 등)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(이하 "최저학력"이라 한다)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<u>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.</u>	제11조(학교운동부 운영 등)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(이하 "최저학력"이라 한다)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<u>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.</u>	기존에는 최저학력 미도달 선수에 대해 <u>"대회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"</u> 였으나, 개정 후에는 <u>"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"</u> 로 변경
② ~ ⑥ 생략	② ~ ⑦ 생략	
	[시행일: 2024. 3. 24.] 제11조	